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호외(號外) 1933(昭和 8)년 10월 1일 일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73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98호(조선총독부철도국·함북자동차상회 간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[朝鮮總督府鐵道局咸北自動車商會間旅客及手小荷物連帶運送規則]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3(昭和 8)년 10월 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명(題名)을 「남만주철도주식회사 북선철도관리국선(南滿洲鐵道株式會社北線鐵道管理局線) 경유(經由) 조선총독부철도국선(朝鮮總督府鐵道局線)과 함북자동차상회선(咸北自動車商會線) 간(間)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(旅客及手小荷物連帶運送規則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1조(條)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북선철도관리국선(南滿洲鐵道株式會社北線鐵道管理局線) 경유(經由) 조선총독부철도국선(朝鮮總督府鐵道局線)과 함북자동차상회선(咸北自動車商會線) 간(間)에 있어서 여객(旅客) 및 수·소하물(手小荷物)의 연대운송(連帶運送)은 본(本) 규칙(規則)에 의(依)해 이것을 취급(取扱)함.

제2조(條) 본(本) 규칙(規則)에는 아래[左]의 약호(略號)를 사용(使用)함.

1 국(局)이란 조선총독부 철도국(朝鮮總督府鐵道局)을, 북선(北線)이란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북선철도관리국(南滿洲鐵道株式會社北線鐵道管理局)을, 상회(商會)란 함북자동차상회(咸北自動車商會)를 말함.

2 하물(荷物)이란 수하물(手荷物) 및 소하물(小荷物)을 말함.

제3조(條) 연대운송(連帶運送)을 하는 범위(範圍)는 아래[左]와 같이 함.

1 여객(旅客)

가 국(局)의 부산(釜山), 대구(大邱), 대전(大田), 용산(龍山), 경성(京城), 평양(平壤), 신의주(新義州), 상인천(上仁川), 인천(仁川), 왕십리(往十里), 청량리(淸涼里), 철원(鐵原), 복계(福溪), 원산(元山), 함흥(咸興), 신북청(新北靑), 성진(城津), 길주(吉州), 명천(明川), 주을(朱乙), 나남(羅南) 및 북청(北靑)의 각(各) 역(驛)과 상회(商會)의 청진(淸津), 나진(羅津) 및 웅기정류소(雄基停留所)와의 상호(相互) 간(間). 단(但) 청진정류소(淸津停留所) 발착(發著)은 웅기(雄基) 경유(經由), 웅기정류소(雄基停留所) 발착(發著)은 청진(淸津) 경유(經由)에 한(限)함.

나 상회(商會)의 청진(淸津)·웅기(雄基) 간(間) 자동차선(自動車線)을 포함한 당(當) 국선(局線: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과 북선선(北鮮線) 각(各) 역(驛: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과의 상호(相互) 간(間)

다 국(局)의 부산(釜山), 대구(大邱), 대전(大田), 용산(龍山), 경성(京城), 평양(平壤), 신의주(新義州), 상인천(上仁川), 인천(仁川), 왕십리(往十里), 청량리(淸涼里), 철원(鐵原), 북계(福溪), 원산(元山), 함흥(咸興), 신북청(新北靑), 성진(城津), 길주(吉州), 명천(明川), 주을(朱乙), 나남(羅南) 및 북청(北靑)의 각(各) 역(驛)과 상회(商會)의 혼춘정류소(琿春停留所)와의 상호(相互) 간(間: 옹기[雄基] 또는 남양[南陽 경유[經由]]).

2 수하물(手荷物)

가 국(局)의 부산(釜山), 대구(大邱), 대전(大田), 용산(龍山), 경성(京城), 평양(平壤), 신의주(新義州), 상인천(上仁川), 인천(仁川), 왕십리(往十里), 청량리(淸涼里), 철원(鐵原), 북계(福溪), 원산(元山), 함흥(咸興), 신북청(新北靑), 성진(城津), 길주(吉州), 명천(明川), 주을(朱乙), 나남(羅南) 및 북청(北靑)의 각(各) 역(驛)과 상회(商會)의 청진(淸津), 나진(羅津), 옹기정류소(雄基停留所)와의 상호(相互) 간(間). 단(但) 청진정류소(淸津停留所) 발착(發著)은 옹기(雄基) 경유(經由), 옹기정류소(雄基停留所) 발착(發著)은 청진(淸津) 경유(經由)에 한(限)함.

나 상회(商會)의 청진(淸津)·옹기(雄基) 간(間) 자동차선(自動車線)을 포함한 당(當) 국선(局線: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과 북선선(北鮮線) 각(各) 역(驛: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과의 상호(相互) 간(間)

3 소하물(小荷物)

국(局)의 부산(釜山), 대구(大邱), 대전(大田), 용산(龍山), 경성(京城), 평양(平壤), 신의주(新義州), 상인천(上仁川), 인천(仁川), 왕십리(往十里), 청량리(淸涼里), 철원(鐵原), 북계(福溪), 원산(元山), 함흥(咸興), 신북청(新北靑), 성진(城津), 길주(吉州), 명천(明川), 주을(朱乙), 나남(羅南) 및 북청(北靑)의 각(各) 역(驛)과 상회(商會)의 나진(羅津) 및 옹기정류소(雄基停留所)와의 상호(相互) 간(間: 청진[淸津] 경유[經由]).

제3조(條)의2 운임(運賃) 및 요금(料金)을 계산(計算)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(各) 운임기관(運賃機關)의 영업(營業) 킬로미터[km·料程]에 1킬로미터[km·料] 미만(未滿)의 단수(端數)가 있을 때는 각(各) 운임기관(運賃機關)은 각각(各各) 별도(別途)로 그 단수(端數)를 1킬로미터[km·料]로 절상(切上)하고, 승차권(乘車券)의 통용기간(通用期間) 계산(計算)의 경우도 동일(同一)함.

제4조(條) 연대운송(連帶運送)을 하는 여객(旅客) 및 하물(荷物)의 접속역(接續驛)은 국선(局線)과 북선선(北鮮線) 간(間)은 수성(輸城), 북선선(北鮮線)과 상회선(商會線) 간(間)은 경원(慶源), 청진(淸津) 및 옹기(雄基)로 함.

제5조(條) 중(中) 「국(局), 상회(商會)」를 「각(各) 운임기관(運賃機關)」으로 개정(改正)하고, 말미(末尾)에 아래[左]의 단서(但書)를 추가(追加)함.

단(但) 국(局)과 북선(北鮮) 간(間)에 있어서 운임(運賃)의 할인(割引)을 하는 경우, 그 할

인율(割引率)을 동일하게 할 때는 병산액(併算額)에서 할인(割引)을 하고, 1전(錢) 미만(未滿)의 단수(端數)가 발생(發生)했을 때는 이것을 절사(切捨)함.

제6조(條) 중(中) 「국선로(局線路)」를 「북선로(北鮮路)」로 개정(改正)함.

제7조(條), 제11조(條) 및 제33조(條) 중(中) 「국(局) 및 상회(商會)」를 「각(各) 운임기관(運賃機關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9조(條) 중(中) 「국(局)·상회(商會)」를 「각(各) 운임기관(運賃機關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10조(條) 승차권(乘車券)의 등급(等級)은 아래[左]와 같이 함.

등급(等級)	당(當) 국 선(局線)	북선선(北鮮線)	상회선(商會線)
1 등(等)	1등(等) 경인선[京仁線], 경원선[京元線], 함경본선[咸鏡本線] 2등(等) 북청선[北靑線] 3등(等)	2 등(等)	단 급(單級)
2 등(等)	2등(等) 북청선[北靑線] 3등(等)	2 등(等)	단 급(單級)
3 등(等)	3등(等)	3 등(等)	단 급(單級)

제12조(條) 중(中) 「국(局)」을 「국(局) 및 북선(北線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14조(條) 및 제27조(條) 중(中) 「국(局)에 있어서」를 「국(局) 및 북선(北線)에 있어서」로, 「국선내(局線內)」를 「국(局) 및 북선선(北鮮線) 내(內)」로 개정(改正)함.

제16조(條) 연대여객(連帶旅客)으로부터 승차권(乘車券) 분실(紛失)의 신청이 있었을 때는 국(局)·북선(北鮮) 간(間)은 모두 이것 취급(取扱)을 하고, 상회선(商會線)에 대해서는 이것 취급(取扱)을 하지 아니함.

제17조(條) 중(中) 「국선(局線)」을 「국선(局線) 및 북선선(北鮮線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21조(條) 중(中) 「국(局) 및 상회(商會)가 정한 바[所定]의 것을」을 「국(局)·북선(北鮮) 간(間)은 국(局)이 정한 바[所定]에 의(依)해 산출(算出)한 것에 상회(商會)가 정한 바[所定]에 의(依)해 산출(算出)한 것을」로 개정(改正)함.

제24조(條) 중(中) 「표시요금(表示料金)」을 「요상액(要償額) 표시료(表示料)」로 개정(改正)함.

제26조(條) 수하물(手荷物)의 무임운송(無賃運送) 중량(重量)은 여객(旅客) 1인당(人當) 아래 [左]와 같이 함.

등급(等級)	국선(局線) 및 북선선(北鮮線)	상회선(商會線)
1·2등(等)	40킬로그램[kg·㏊]	10킬로그램[kg·㏊]
3 등(等)	30킬로그램[kg·㏊]	10킬로그램[kg·㏊]

소아운임(小兒運賃)을 지불(支拂)한 여객(旅客)에 대한 무임운송(無賃運送) 중량(重量)은 전항(前項) 중량(重量)의 반(半)으로 함.

제30조(條) 중(中) 「국(局) 및 상회(商會)의」를 「국(局) 및 북선(北鮮)의 운임(運賃)과 상회(商會)의」로 개정(改正)함.

제31조(條) 중(中) 「국착(局著)」을 「국(局) 및 북선착(北鮮著)」으로, 「국(局)이 정한 바[所定]」를 「국(局) 및 북선(北鮮)이 정한 바[所定]」로 개정(改正)함.

제32조(條) 중(中) 「국(局) 및 상회(商會)」를 「인접운수기관(隣接運輸機關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청진(淸津), 나진(羅津) 및 웅기정류소(雄基停留所)와의 상호(相互) 간(間), 단(但) 청진정류소(淸津停留所) 발착(發著)은 웅기(雄基) 경유(經由), 웅기정류소(雄基停留所) 발착(發著)은 청진(淸津) 경유(經由)에 한(限)함.

조선 내 철도·궤도 및 항로 간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(朝鮮內鐵道·軌道及航路間旅客及手·小荷物連帶運送規則) 제1조(條)에 의(依)해 조선총독부철도(朝鮮總督府鐵道)와 연대운송(連帶運送)을 하는 철도(鐵道)·궤도(軌道) 및 항로(航路)의 명칭(名稱), 그 접속역(接續驛), 취급종별(取扱種別), 특종취급사항(特種取扱事項)은 별표(別表)와 같이 함.

별표(別表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철도(鐵道), 궤도(軌道), 항로(航路) 명난(名欄) 중(中) 「1, 「2, 「3, 「4, 「5, 「5의2, 「6, 「7, 「8, 「9, 「10」을 무릇 「2, 「3, 「4, 「5, 「6, 「7, 「8, 「9, 「10, 「11, 「12」로, 접속역난(接續驛欄) 중 「함경본선(咸鏡本線: 고무산[古茂山])」을 「함경본선(咸鏡本線: 수성[輸城]·북선선(北鮮線) 수성(輸城), 고무산(古茂山) 간(間) 경유(經由)」로, 「청진선(淸津線: 청진[淸津]) 투먼선(圖們線: 웅기[雄基])」를 「함경본선(咸鏡本線: 수성[輸城]·북선선(北鮮線) 수성(輸城), 청진(淸津) 간(間) 또는 수성(輸城), 웅기(雄基) 간(間) 경유(經由)」로 개정하고, 1의 항(項)을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1	남만주철도주식회사 북선철도관리국 (南滿洲鐵道株式會社 北鮮鐵道管理局)	함경본선(咸鏡本線: 수성[輸城])	여객(旅客)·수하물(手荷物)·소하물(小荷物) 및 부수(附隨) 소하물(小荷物)	1 별도(別途)로 정(定)한 수속(手續)에 의해 금강산탐승차권을 발매함 2 별도(別途)로 정(定)한 수속(手續)에 의해 경찰관가족(警察官家族) 이주할인(移住割引)을 함 3 별도(別途)로 정(定)한 수속(手續)에 의해 부산(釜山)에 발착(發著)하는 군인(軍人)·군속(軍屬)의 가족(家族) 종자(從者)에 대(對)한 운임할인(運賃割引)을 함
---	--	--------------------	--	---